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청소년과 인터넷은 친구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는 것부터 친구들과 대화하기, 물건 구입하기까지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생활화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 콘텐츠에서는 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보호방법, 게임중독 확인방법과 치료방법, 자료를 업로드나 다운로드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 스팸메일과 음란물에 대응하는 방법, 인터넷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1
1.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4
1.1.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알아보기 4
1.1.1.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4
2.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기 7
2.1. 개인정보 보호하기 7
2.1.1. 사이트 가입할 때 개인정보 보호하기 7
2.1.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운영자의 의무 알아보기 10
2.1.3.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구제 받기 15
2.2. 유해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개설하지 않기 18
2.2.1. 유해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기 18
2.2.2. 유해사이트 개설하지 않기 20
3. 인터넷 강의 듣기 23
3.1. 인터넷 강의의 신청 및 해지 23
3.1.1. 인터넷 강의, 선택부터 해지까지 23
4. 인터넷 게임하기 26
4.1.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 26
4.1.1. 게임사이트 가입 및 게임중독 예방하기 26
4.2. 게임중독 치료를 위한 조치 28
4.2.1. 게임중독 치료하기 28
5.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기 31
5.1. 자료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시 주의사항 31
5.1.1.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31
5.1.2. 스팸 및 음란물 유포에 대처하기 33
6. 인터넷으로 대화하기 37
6.1. 대화창 등을 통해 대화를 하는 경우 37
6.1.1. 언어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37
6.1.2. 성매수·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대처하는 방법 41
6.2. 댓글을 다는 경우 44
6.2.1.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 45
7. 인터넷으로 물건사기 48
7.1. 물건의 구입 및 반품하기 48
7.1.1. 물건 구입하기 48
7.1.2. 물건 반품하기 50

1.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1.1.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알아보기

1.1.1.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청소년과 인터넷

청소년

▪ “청소년”이란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을 이르지만,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소년으로 보고 있어요(「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본문).

정보통신망(인터넷)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며, “인터넷”은 정보통신망의 일종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위한 국가·사회·가정의 책임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

▪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위한 국가기관의 책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참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의 책임

▪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다음의 조치 등을 취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조제1항).

-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 폭력·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이를 멈추도록 하고 선도할 것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 등(이하 “관계 기관 등” 이라 함)에 신고·고발 등을 하는 조치를 취할 것
-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관계 기관 등에 신고·고발 등을 하는 조치를 취할 것
- 청소년이 청소년 폭력·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면 관계 기관 등에 신고·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가정의 역할과 책임

▪ 청소년의 부모(친권자) 또는 부모를 대신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부모 등”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려고 하면 즉시 막아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조제1항).

▪ 부모 등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거나 막을 때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과 단체 등에 상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조제2항).

▪ 부모 등은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잘못된 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조제2항).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법률

「청소년 보호법」

▪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 보호하기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기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님(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2제1항).

▪ 개인정보 보호하기

▹ 사이트 운영자는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학력·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거나 물건사기

▹ 강의를 신청하거나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사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믿을만한 업체인지, 신고번호·신고기관 등이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

▪ 취소나 반품하기

▹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서면을 받은 때 보다 물품공급이 그 이후면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인터넷 게임하기

▹ 인터넷 게임을 하기 전 게임물의 등급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게임을 해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참조).

▪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예방 및 치료

▹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접속을 제한해 주는 "게임시간 선택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 제2조제10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5항 참조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 또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

2.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기

2.1. 개인정보 보호하기

2.1.1. 사이트 가입할 때 개인정보 보호하기

사이트 가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는 가입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입절차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 “개인정보”란 ?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가명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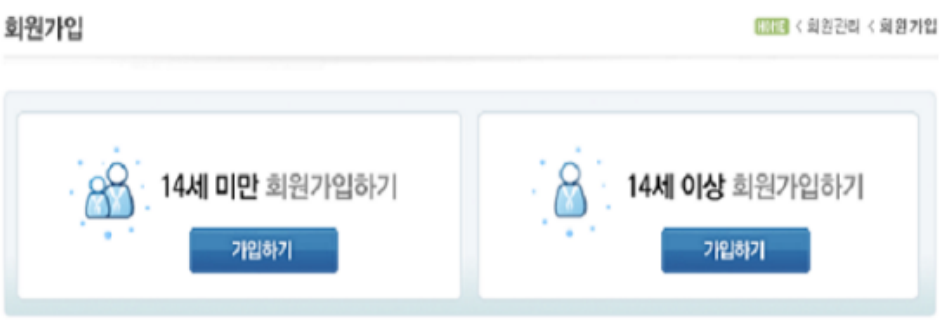
> ※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호의2).

▹ 즉,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나 집주소, 핸드폰번호나 집 전화번호, 사진, 다니고 있는 학교, 주고받은 문자, 채팅내용, 동영상 등을 통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와 이런 정보를 합치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해요.

연령에 따른 가입절차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님(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1항), 연령에 따라 가입화면이 달라져요.

※ 예시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가입하고 싶은 사이트가 있다면 반드시 부모님(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고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구하는 절차

▪ 사이트의 운영자는 가입화면에서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리고 가입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1호 및 제2항).

※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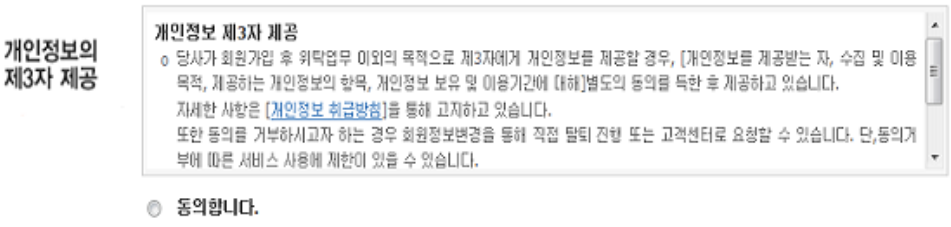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구하는 절차

▪ 사이트의 운영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왜, 얼마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적어서 가입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

▪ 알려야 하는 정확한 내용은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 예시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때는 주의하세요~~!

·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동의합니다"를 누르면 쇼핑몰, 학습지 회사 등에서 광고 전화나 문자 등을 보낼 수 있어요. 따라서 동의를 누를 때에는 어떤 곳에 제공되는지 꼼꼼히 읽어보고 신중하게 동의를 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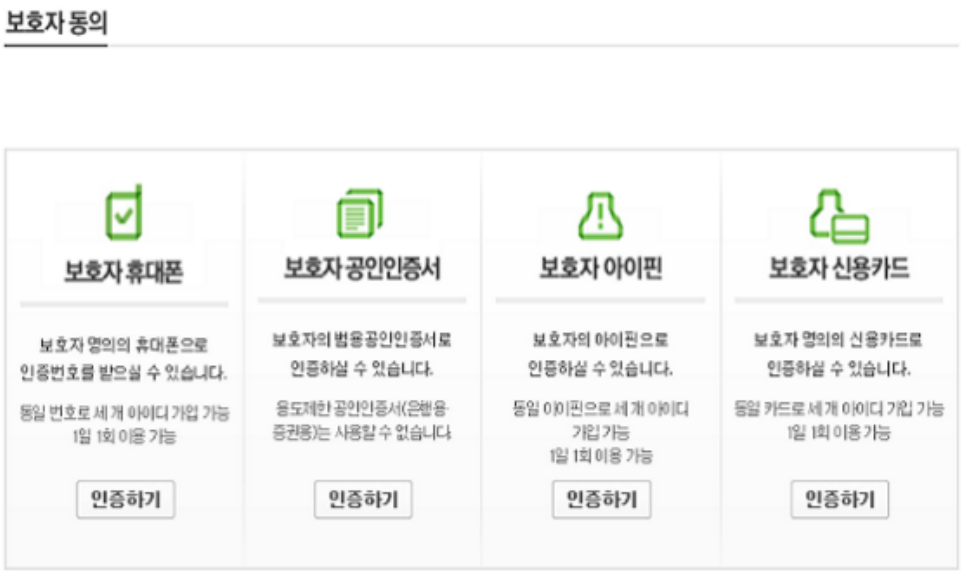
· 사이트 운영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 필요한 정보를 말함) 이외의 개인정보(예: 제3자에게 제공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3항), 제3자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부모(법정대리인)의 가입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님(법정대리인)과 함께 가입을 하는 것이 좋아요.
- 사이트에 가입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2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 그 밖에 위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예시



가입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해 주도록 요구하기

- 가입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

▪ 사이트 운영자는 가입자가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3항).

▪ 위반할 경우

▹ 사이트 운영자가 가입자의 철회에도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23호).

침해정보의 삭제요청하기

▪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증명하고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내용을 사이트에 올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러한 요청을 한 사람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어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 삭제요청 시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

▹ 사이트 운영자는 삭제 요청 등을 받으면 즉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정보를 공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전단).

▹ 또한 사이트 운영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후단).

2.1.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운영자의 의무 알아보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

▪ 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알아두는 것도 필요해요. 그럼, 사이트 운영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알아볼까요?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의무

▪ 사이트 운영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 그리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 등을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

> ※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
> · 사상, 신념
>
> · 노동조합 또는 정당의 가입·탈퇴
>
> · 정치적 견해
>
> ·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 다만, 가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 이런 경우에도 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함)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 사이트 운영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가입자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3항).

▪ 위반할 경우

▹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한 사람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 또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4호 및 제5호).

▹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는 경우라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5호).

▹ 공개되는 민감정보가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6호).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사이트 운영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 그 밖에 위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 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주소 또는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정대리인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 사이트 운영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3항).

▪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제3항)

▪ 그 밖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4항).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능을 통합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0년 8월 5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기관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위반할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3호 및 제64조의2제1항제2호 본문).

>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해요~~**
>
> **(질문)** 부모님 허락을 받지 않고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서 게임을 했는데, 한달 후 요금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변)** 14세 미만의 아동이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과 같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반드시 부모님(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만약 부모님의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에 가입해서 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라면 일단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게임사이트에 연락해서 요금을 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제3호. ④인터넷콘텐츠업), 「민법」상 "취소"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41조 본문).

· 그러나 부모님 모르게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회원 가입을 했거나 부모님께서 자녀가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경우 등에는 요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의무

▪ 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1항).

▪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을 안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해당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본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사이트 운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통지해야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4항 전단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제3항)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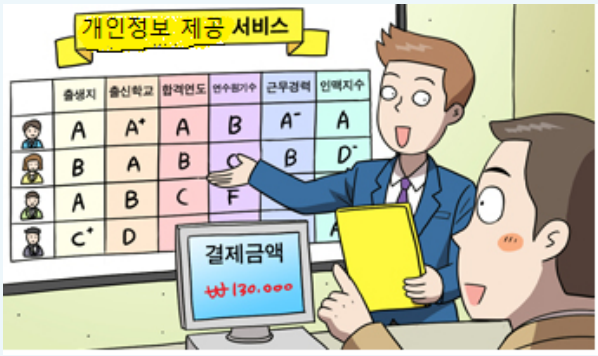
▪ 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사이트를 통해 공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삭제·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제1항·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

▪ 위반할 경우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개인정보를 유출등을 한 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이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및 제75조제2항제5호).

-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7호·제18호).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의무



- 사이트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2호).

- 위반할 경우

  -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9호).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

- 사이트 운영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 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제1항).

  -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 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함)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

  - 위 규정된 것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위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제2항).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 위 규정된 것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 위반할 경우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

2.1.3.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구제 받기

개인정보의 유출로 피해를 입었어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

▪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나오거나, 내가 개설하지도 않은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거나, 채팅 사이트에 로그인도 하지 않았는데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거나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내 개인정보를 유출해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해요.

※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아니 아니 아니되오~~!



(질문)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이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겠다고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줬는데, 사이버캐시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요금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서 사이버캐시를 구입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게임 아이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린이를 상대로 하여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거나 게임아이템을 키워주겠다고 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서 자기가 웹사이트 관리자라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사이버캐시나 게임아이템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자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빨리 자기의 **비밀번호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첫화면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있고 그 안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있습니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알림마당-개인정보보호 수칙-어린이/청소년-피해 예방법 참조>

▪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두면 좋겠죠?



※ 청소년 개인정보보호수칙

-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최소 8자리 이상 또는 10자리 이상의 길이로 만드세요.
-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세요.
- 본인확인은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 이동통신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명의도용확인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친구에게도 알려주면 안돼요.
- P2P 공유폴터에는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마세요.
- PC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금융거래를 이용하지 마세요.
-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 또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악성코드 감염 및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개인정보 침해신고 또는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세요.

<개인정보보호 포털-알림마당-개인정보보호 수칙-어린이/청소년-개인정보보호수칙 참조>

개인정보의 유출로 입은 피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일단 부모님(법정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죠? 그 후에는 국가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나 전화(국번없이 ☎ 118)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어요.

조정받기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접수를 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참조).

▪ 분쟁조정이라고 해서 어렵거나 힘든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검토 후 상대방에게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주므로 신청인은 신청을 한 후 기다리는 것이 사실상 전부랍니다. 그러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아요.

▪ 조정절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 제도안내-분쟁조정 제도>

▹ 조정 전 합의 권고

√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 합의가 성립되면 사건은 종결되지요.

▹ 조정절차 개시

√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참조).

▹ 조정성립

√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해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신청인과 상대방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또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

민사소송 제기하기

▪ 조정절차를 거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1항 전단).

※ 민사소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 유해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개설하지 않기

2.2.1. 유해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기

가입 전 유해사이트인지 확인하기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함)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의 확인**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된 매체물의 목록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정책정보-정책자료실-주제별 정책자료-청소년-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 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기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에는 “19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호나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문구나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사이트에는 가입하지 말아야 해요.

※ **문구**

· “이 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기호**



[출처: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제2조가목]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문구나 기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

유해사이트를 이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넷도박을 하는 경우

▪ 도박은 중독성이 심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망치기 때문에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어요.

▹ 잠깐 동안 오락을 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6조제1항).

▹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형법」 제246조 제2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9조).

> **※ 인터넷도박 중독되기 쉬우니 예방이 중요해요~~**
>
> 인터넷도박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으로 현금이 아닌 사이버머니 등이 오가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잃었는지 현실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아 많은 액수의 돈을 잃을 가능성이 크고,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박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
> 특히 중독이라는 현상에 취약한 청소년은 더 쉽게 빠져들 수 있으므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자체에 접속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
> 인터넷도박중독이라고 생각되는 청소년은 이 콘텐츠 < 게임중독 치료하기 > 를 보고, 상담기관을 찾아 상담을 통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니 지금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불법의약품(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사용은 중독성이 강하고 내성을 생기게 해 사람의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판매나 사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어요.

▹ “마약”이란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잎(코카관목의 잎을 말함)이나 이것에서 추출되는 알카로이드 등을 말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본문).

▪ 불법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유인·권유·알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유인·권유·알선하면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 불법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2호).

▪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판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입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고, 중독성이 강해 인체에 많은 해를 가하므로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접해서는 안 되는 물질임을 잊지 마세요.

▪ 신고하기

▹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 또는 ☎ 112를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마약, 환각물질과 같은 약품과 유해물건 등은 무엇인지, 유통시킬 경우 어떤 처벌이 있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배·술을 거래하는 경우

▪ 담배·술을 판매하는 경우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담배나 술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참조).

▹ 누구든지 청소년의 부탁을 받고 담배나 술을 구입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면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2항).

▪ 위반할 경우

▹ 청소년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담배나 술을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판매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3.).

▪ 신고하기

▹ 담배나 술을 판매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 또는 ☎ 112를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2.2.2. 유해사이트 개설하지 않기

유해사이트를 개설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자살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

▪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일수록 마치 유행처럼 자살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통해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 및 제13조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살할 사람을 구하거나,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요. 이렇게 자살사이트를 개설해서 다른 사람을 자살하도록 시키거나 도움을 주는 것은 자살교사죄나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고 가입하지도 말고, 개설하지도 말아야 해요.

▹ 자살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교사 또는 방조하여(자살할 뜻이 없는 사람에게 자살을 결심하도록 하거나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자살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2조제2항).

폭발물 제조 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

▪ "폭발물"이란 ?

▹ “폭발물”이란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이 날아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지닌 물건을 말합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

▪ 폭발물사용 선동죄

▹ 호기심으로든, 다른 이유로든 다른 사람이 폭발물을 제조·사용할 수 있도록 폭발물제조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은 폭발물사용 선동죄에 해당하는 위험한 행동이니 절대 하지 않도록 해요.

▹ 폭발물제조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폭발물을 제조·사용할 수 있도록 선동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20조제2항).

▪ 폭발물사용죄

▹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미수(시도는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됩니다(「형법」 제119조제1항 및 제3항).

불법·유해 사이트 신고하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기

▪ 신고대상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4.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6.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9.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11.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12.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13.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신고방법

▹ 신고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mainPage.do)를 이용하거나 **전화(국번없이 ☎ 1377)**를 이용해 하면 됩니다.

▪ 처리절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전자민원-통신민원-불법유해정보 이용안내>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기

▪ 인터넷을 이용하는 도중 불법 사이트나 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발견하면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 신고방법

▹ 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에서 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3. 인터넷 강의 듣기

3.1. 인터넷 강의의 신청 및 해지

3.1.1. 인터넷 강의, 선택부터 해지까지

인터넷 강의 선택하기

"인터넷 강의"란?

▪ 청소년들이 학습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이러닝)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이러닝콘텐츠라고 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 인터넷 강의를 신청한 후 강의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거나, 컴퓨터에서 강의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거나 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를 대비해 어떤 인터넷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강의 신청을 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신청 전 확인사항

▪ 인터넷 강의 사이트의 신용도를 확인하세요.

▸ 강의를 신청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이트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는지, 학습사이트 하단에 기재된 사업자 정보와 통신판매 신고정보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통신판매업 등록정보 예시

등록현황			
통신판매번호	2021-서울OO-OO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
신고현황	통신판매업 신고	법인여부	법인
상호	㈜법령정보교육원		
대표자명	OOO	대표 전화번호	02-OOO-OOOO
판매방식	인터넷	취급품목	교육/도서/완구/오락
전자우편	abcd@edu.co.kr	신고일자	20220123
인터넷도메인	law-education.com		
신고기관명	서울특별시 OO구청		

▪ 강의 대금을 납부하기 전 강의내용이나 환불내용 등을 확인하세요.

▸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업체에서 1회 이상 제공하는 시범학습기간 또는 기회를 통해 신청하려는 강의내용이 내 학습목표와 수준에 적절한지 판단한 후에 수강신청하는 것이

좋아요(「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3조제1항 참조).

▹ 또한 수업료를 결제하기 전에 가격, 공급 방법 및 시기, 신청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방법·효과,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약관 등 인터넷 강의와 관련된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에 결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참조).

※ **예시**

수능완벽대비 365 – 국어의모든것	
제작년도 2012년	강좌이용가능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대상학년 고 3	동영상이용 – 일반화질 // 고화질
강좌과목 – 국어	(최상버전 – Internet OOO)
강좌구성 총 50편	수강료 O,OOO원
제작방식 동영상 + 현장강의	강좌정보의자세한정보 < 클릭 >
※ 강의최적 WINDOW OOOO, VIEWR 2.0 ※ 2022년강좌 MP4 다운로드가능	
※ 수강취소및환불규정 수강취소는수강시작일로부터 7일이내에만가능하고, 2강이상다운로드를받은경우에는취소나변경이불가능하므로이점유념하시기바랍니다. 청소년의수강환불에대해서는전화등을통해부모님(법정대리인)의확인을받은후환불이가능하므로, 환불처리에다소시일이걸릴수있습니다.	

▪ 약관을 확인하세요.

▹ "약관"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해지, 환불 등과 같은 중요한 계약 내용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의 내용을 말하며, 약관에 동의하면 계약이 성립되므로 주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동의합니다"를 체크하세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 만약 표준약관에 비해 개별 이용약관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약관이라면, 해당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9조제1항제1호).

> ※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
> ※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이 궁금하면 클릭하세요~~

▪ 그 밖에도 학습 프로그램이 제대로 서비스되는지, 사이트 운영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나 사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면 더 확실하겠죠.

인터넷 강의 철회 또는 중도해제·해지하기

인터넷 강의 철회하기

▪ 강의시작일 전에 강의를 듣지 않기로 하고 수강료를 환불받는 것을 **철회**라고 하고, 강의를 듣는 도중 더 이상 수강하지 않기로 하고 수강료를 환불받는 것을 **해제·해지**라고 해요. 수강 전이냐 후냐에 따라 환불되는 수강료가 달라지므로 환불을 요청하기 전 꼭 확인하세요.

- 인터넷 강의를 신청한 수강자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는 인터넷 강의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1항).
- 청약철회는 인터넷 강의 수강자가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수강철회로 인한 교재 등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수강자가 부담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 사이트 운영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수강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며, 수강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 영업일 내에 수강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3항·제5항).

인터넷 강의 중도해제하기

▪ 인터넷 강의 수강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중도해제할 수 있어요(「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제1항).

- 인터넷 강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인터넷 강의 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자가 수강자의 동의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인터넷 강의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수강자의 이용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6조제1항·제2항).

인터넷 강의 중도해지하기

▪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강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수강자의 이용계약 중도해지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총 계약대금의 10%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제3항).

4. 인터넷 게임하기

4.1.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

4.1.1. 게임사이트 가입 및 게임중독 예방하기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게임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어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

▪ 인터넷 게임사이트에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게임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부모님과 함께 하도록 해요(「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

청소년의 연령에 맞는 게임을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게임등급 이용하기

▪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기 전 다음과 같은 게임물의 등급을 확인하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게임을 이용해야 해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참조).

-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등급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1. 나).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평가용
				

▪ 위반할 경우

- 게임물의 등급구분을 위반하고 청소년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이트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호).

게임은 적절한 시간 동안만 이용하도록 해요.

스스로 인터넷 이용시간 관리하기

▪ 어른들이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 스스로가 인터넷 이용시간과 게임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런 우려는 모두 사라지겠지요? 스스로 게임시간을 조절해서 우리 청소년의 현명함을 보여주자구요.

> ※ 인터넷 중독여부 상담 및 예방에 대해서는 <스마트쉼센터(www.iapc.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PC방 이용하기

▪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 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본문).

▹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경우에는 출입시간 외에도 PC방을 이용할 수 있어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단서).

▪ 위반할 경우

▹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PC방 등에 출입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하기

▪ "게임시간 선택제"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 동안 이용을 제한해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사이트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5항).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시간 선택제 홍보 캐릭터 >

※ 셧다운제도는 본래 "강제적 셧다운제도"와 선택적 셧다운제도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구분되는데, 게임 이용 환경 등의 변화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됐습니다[관계부처 합동,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2021. 8.)].

4.2. 게임중독 치료를 위한 조치

4.2.1. 게임중독 치료하기

나는 게임중독일까?

게임중독 진단하기

▪ 게임에 중독되면 가족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성적이 떨어지는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나요. 이런 증상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바로 부모님이나 선생님, 게임중독상담센터 등에 상담을 하고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해요.

▪ 게임중독 자가진단은 스마트쉼센터(www.iapc.or.kr)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에서 할 수 있어요.



게임중독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방안

▪ 치료는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친구들과 운동을 하는 등 야외활동시간을 늘리세요. 무엇보다 꿈을 가지고 이루려고 노력해 보세요. 노력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 아이윌센터, 예방 및 치유방안>

상담 및 치료기관 찾기

▪ 인터넷중독에 대한 상담은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를 통한 온라인 상담, 센터 내방상담, 가정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 1599-0075)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또한 청소년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www.kyci.or.kr)을 이용하거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에서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웹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온라인 상담, 채팅상담 또는 전화상담(☎ 1388)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 ※ 그 밖에 지역별 상담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센터소개-상담기관안내-스마트쉼센터 >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지역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치유·교육 프로그램 이용하기

▪ 성평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상설 치유학교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기숙치유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용해 보세요.

구 분	내 용	
기숙형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대상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기간	11박12일
	내용	심리검사, 개인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집단상담, 체험활동 등(프로그램 참가 후 청소년상담 전문가와 연계) 지원(3개월)
	비용	참여 및 프로그램 비용 무료/식비 등 일부 자부담
	문의	거주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전화(☎ 1388)로 문의
가족치유캠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 위험군 초등생 및 부모
	기간	2박3일+사후모임
	내용	청소년 집단상담, 부모교육 프로그램, 대안활동, 기타 가족활동 등
	비용	참여 및 프로그램 비용 무료, 교통비 등 일부 자부담
	문의	거주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전화(☎ 1388)로 문의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상설 치유기관)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 대상
	기간	1~4주 과정
	내용	심리검사, 개인・집단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대안활동, 자치활동 등
	문의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홈페이지 또는 전화(☎ 063-323-2646, 2282)로 문의

▪ 그 밖에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비롯한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등에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녀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기

5.1. 자료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시 주의사항

5.1.1.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저작권"이란 무엇이고,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작권" 및 "저작물"이란 ?

▪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저작권법」 제10조),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권 침해"란 ?

▪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기초지식-저작권 침해와 구제).

자료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시 주의사항

▪ 온라인에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때 누가 만들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기 쉬워요~~.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업드로나 다운로드를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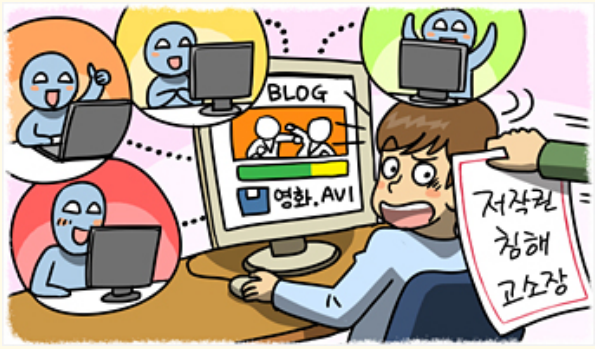
※ 자료를 업로드 할 때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질문) 음악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노래를 다운받았습니다. 이 노래를 제 블로그에 올려 방문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스트리밍 방식). 그래도 되나요?

(답변) 안 됩니다. 미니홈피나 블로그 회사에 대가를 치르고 구입한 음악은 괜찮지만, 여러분이 가진 음악 파일을 변환해서 배경 음악으로 쓰는 것은 안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교육-배움터-이럴때 저작권 침해 참조>

※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때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질문) 친구로부터 무료로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받고 최신 영화를 한 편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법무법인이라는 곳에서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도 몰랐고 혼자서만 봤는데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는 건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인정해 주는 사적복제 규정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다만, 토렌트나 P2P의 경우에는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동시에 업로드가 되도록 되어 있어 저작물 공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청소년들이 관련 법령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일부 법무법인이 이를 고소한 후,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황해 합의에 응하기 보다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내방 또는 서신·온라인·전화(☎ 1800-5455)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교육-배움터-이럴때 저작권 침해 참조>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

▪ 형사처벌

-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자 등이 고소를 해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저작권법」 제140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

▪ 민사소송

- 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1항).

※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는데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질문) 부모님의 여행사 사업을 돕기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에 여행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올렸습니다. 사진을 검색할 당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고, 단순히 가게 홍보를 위해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대방이 민·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처벌 받게 되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어야 하고, 사진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2항).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비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당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게의 운영을 위해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 것으로 보입니다.
>
>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하기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저작권법」 제112조제1항).
- 조정신청방법
  -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나 **전화(☎ 1800-5455)**등을 통해 먼저 상담을 신청한 후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 조정방법(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ㅡ사업ㅡ조정·알선 참조)
  - 분쟁조정은 3개월 정도가 걸리고, 비용은 1 ~ 10만원 정도입니다.
  -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5.1.2. 스팸 및 음란물 유포에 대처하기

스팸메일 방지하기

"스팸메일"이란 ?

- “스팸메일”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상업적 메일을 말해요(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불법스팸-스팸 신고).

> ※ 각종 불법스팸의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센터소개-불법스팸 대응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불법스팸은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 또는 민원센터(☎ 11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팸신고 처리절차

- 스팸메일 등을 받고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를 하면, 센터에서 스팸메일을 보낸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해 혐의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의뢰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불법스팸-스팸신고 처리절차 안내>

▪ 위반할 경우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광고성 메일을 전송한 사람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7호).

음란물 유포에 대처하기

음란물에 대해 알아두기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윤리성 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게임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음란물 유포 및 소지에 대한 처벌규정

▪ 음란물을 메일로 보낸 경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음란물을 유포 또는 판매한 경우

▹ 이익을 위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포 또는 판매하거나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1호).

▹ 음란한 소리나 영상이 나오는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 이익을 위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인터넷에 반포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 또는 소지한 경우

▹ 이익을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대처방법

▪ 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지 않기

▹ 위의 처벌규정을 보면 음란물을 돈을 받고 판다거나, 다른 친구에게 메일 등을 이용해 보내거나,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질문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 영화도 포함되나요?
>
> **(답변 1)** 네, 포함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므로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 영화도 포함됩니다.
>
> **(질문 2)**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으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
>
> **(답변 2)** 단순히 교복을 입고 있다는 것만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음란물의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니에요.
>
> <헌재 2015. 6. 25. 2013헌가17 등 참조>

▪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다운로드 받기

▹ 음란물을 보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그린i-Net 프로그램(www.greenine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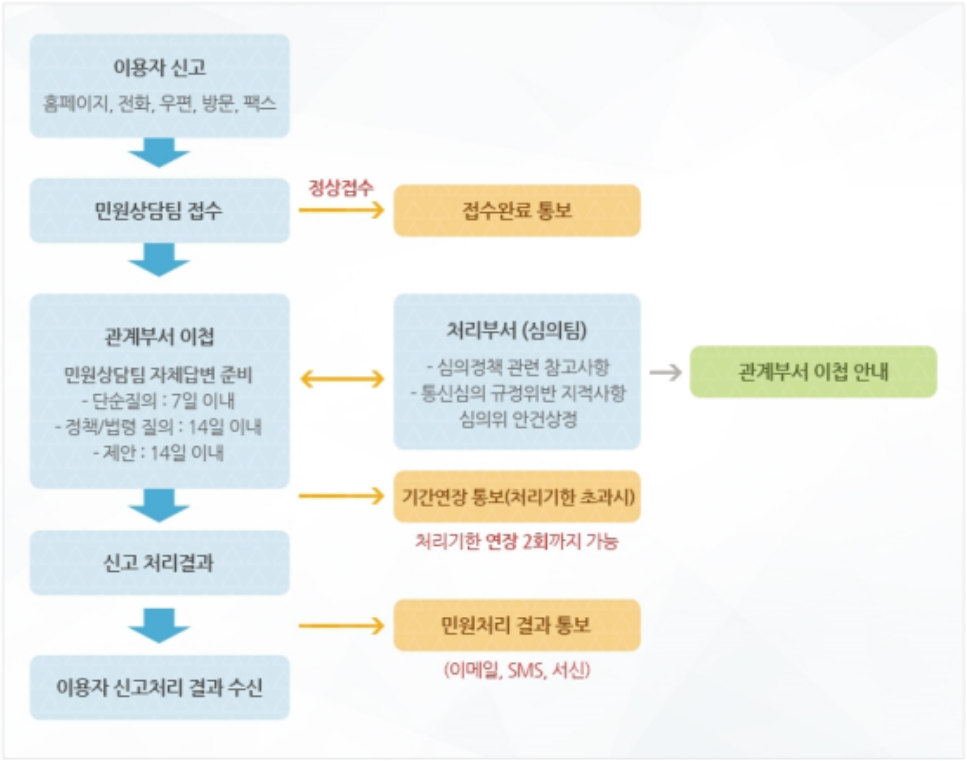
<그린i-Net 홈페이지-S/W 다운로드>

유해음란물 신고하기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유해정보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신고방법은 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 에서 신고하거나 ② **전화 국번없이 ☎ 1377** 로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어요.

▪ 처리절차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전자민원-통신민원-불법유해정보 이용안내>

6. 인터넷으로 대화하기

6.1. 대화창 등을 통해 대화를 하는 경우

6.1.1. 언어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언어폭력은 무엇이고 언어폭력으로 성립되는 죄에는 무엇이 있나요?

"언어폭력"이란 ?

▪ “언어폭력”이란 말로 협박이나 욕설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하며, 사이버 모욕죄나 인터넷 명예훼손죄,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에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사이버 모욕죄" 또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에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사이버 스토킹"이란 ?

▪ “사이버 스토킹”이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소리,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참조).

언어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고 싶어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처벌규정

▪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참조).

▪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참조),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 ※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명예훼손-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을 참조하세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 을 참조하세요.

학교에서 친구에게 하는 욕설~~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

▪ 학교에서 친구에게 욕설이나 조롱을 하거나 비웃는 등의 행위를 해서 괴롭힌다면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에 해당해요.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도 상대방 친구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면 폭력에 해당하니 주의하고 이런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해요.

※ 언어폭력의 예시

- 메일 등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위
- 채팅 등을 통해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
- 욕설을 하는 행위
- 험담을 하는 행위
-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를 포함)
-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 인터넷 등에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올리며 놀리는 행위
-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 본인이 싫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위
-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알리세요.

▹ 학교폭력의 일종인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고 가해 학생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요.

▪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청하세요.

▹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 연락해 삭제요청을 하세요.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운영자는 즉시 삭제해야 해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진상을 조사하게 되는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참조).

■ 형사고소를 할 수 있어요.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조사 후 「형법」이나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할 거예요.

√ 「형법」의 적용을 받을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 "보호처분"이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입니다.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소년원에서 정해진 기한을 보내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소년법」 제1조 및 제32조 참조).

※ 학교폭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 「형법」에 따른 처벌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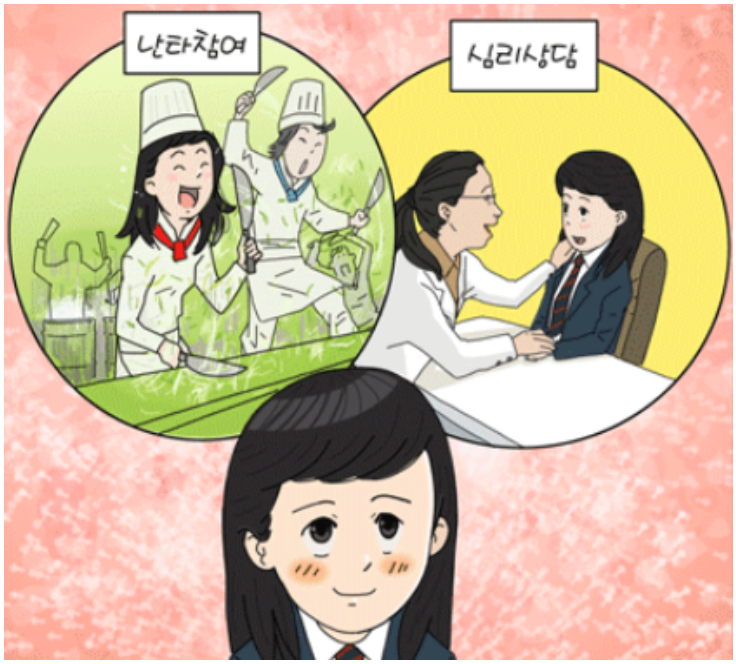
가해유형	처벌내용	근거규정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57조제1항 및 제3항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60조제1항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286조
약취(略取) 또는 유인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87조 및 제294조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
재물절취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9조 및 제342조

- 「소년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규정

유 형	내 용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수강명령(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1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200시간 이내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2년 이내

▪ 상담 등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아요.

▹ 언어폭력으로 힘든 경우 참지 말고, 상담센터나 전문가를 통해 상담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 치료를 하듯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경우도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답니다.



※ 학교폭력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스쿨로(http://schoolaw.lawinfo.or.kr) 홈페이지 > 를 참조하세요.

6.1.2. 성매수·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대처하는 방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무엇이고, 이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① 아동·청소년에게, ②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에게, 또는 ③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돈을 주거나 그 밖의 편의제공 등을 약속하고 성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에게 하거나 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성매수 제안 등에 대한 처벌규정

▪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구매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람에 대한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강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항).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한 사람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한 사람

3) 아르바이트생 등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한 사람

4) 영업을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 1)번부터 3)번까지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한 후 그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4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성구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에 대한 처벌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

▹ **영업이 아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를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제2항제4호).

▹ **영업이 아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사람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알선하거나 인터넷으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를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제2항제4호).

▹ **영업이 아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알선하거나 인터넷으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처벌규정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성적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위의 1. 또는 2.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채팅으로 성적 행위 또는 성구매를 강요당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래도 안 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채팅방에서 채팅을 할 때 지금 만나자는 등의 글이 적힌 성매수를 제안하는 쪽지가 날아오거나 이상한 말이 적힌 이메일을 받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일단 상대방에게 강한 어조로 불편하고 나쁜 기분에 대해 표현하고 다시는 그런 것을 보내지 말도록 요구하세요.

▹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쪽지나 메일 등이 날아온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고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신고한 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 또 다른 방법은 성매수 제의 등을 한 화면을 캡쳐해 두었다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 성매수를 제안하는 쪽지나 이메일을 받은 후 기분나빠하며 참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진이나 불법촬영 또는 신상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고민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 피해를 인지했다면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신고해야 해요.

▹ 유포된 사이트를 안다면 링크를 확보해두고, 메신저 증거물이 있을 경우 캡쳐하고 채팅방을 나가시면 안됩니다.

▹ 디지털성범죄 신고는 사이버경찰청(☎ 112)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로 하면 돼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전자민원-디지털성범죄신고>

- 그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연락하세요.
  -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무료로 불법 유포 영상물의 삭제와 경찰 신고에 필요한 증거 수집 등을 도와줘요.
  -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과 의료비, 무료 법률서비스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홈페이지	전화번호
십대여성인권센터	www.teen-up.com	☎ 010-8232-1319 ☎ 010-6864-1319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www.women1366.kr	☎ 1366(24시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d4u.stop.or.kr	☎ 02-735-8994(24시간)
그 밖의 지원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고센터)	☎ 02-500-9000	

6.2. 댓글을 다는 경우

6.2.1.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례

▪ 인터넷에 “어느 학원이 별로더라, 어떤 제품이 별로더라”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다는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해요.

> **※ 댓글은 신중하게~~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
> (질문) 다음 2가지 유형으로 댓글을 남긴 학생들 중 어떤 학생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
> ① “법령 학원과 학원 중 어디가 좋은가요?”란 질문에 “법령 학원은 불친절하고 잘 가르치지도 못해요. 절대 가지 마세요.” 라는 댓글을 남긴 A양
>
> ② “지역에 있는 법령 학원 어떤가요?”란 질문에 “지역 법령 학원의 법령 선생님에게 수업을 들었지만 정말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성적이 더 떨어졌어요. 절대 비추”라는 댓글을 남긴 B군
>
> (답변) 정답은 ② B군 이에요. ①과 같은 댓글은 법령 학원이란 명칭의 학원이 여럿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원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 명예훼손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②와 같은 댓글은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있는 법령 학원인지, 어떤 법령 선생님인지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요(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
> 이처럼 댓글에 누구나 어디에 위치한 어떤 학원인지, 어떤 선생님인지 알 수 있도록 상대방을 공개해서 기재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댓글을 쓸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고 최대한 예의바르게 적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단 둘이서만 주고받은 메일이나 문자로는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아요.

> **※ 채팅방에서 한 인신공격성 발언,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
> (질문 1) 친구 3명과 비밀 채팅방에서 같은 반 친구인 B군이 며칠 전 물건을 훔치고 도망쳤고, 항상 거짓말만 해서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얘기한 친구 중 한명이 채팅내용을 복사를 해서 B군에게 보여줬고, B군은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인터넷 명예훼손인가요?

(답변 1) 친구 3명과 비밀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눈 것은 공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게시해 내용을 퍼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므로 인터넷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

※ 구체적이지 않은 댓글,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질문 2) 외모 때문에 고민하던 한나는 나잘란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항의를 했지만 성형외과에서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한나는 “나잘란 성형외과와 성형외과 중 어디가 좋은가요?”란 질문에 “나잘란은 불친절하고 수술 결과도 엉망이에요. 절대 가지 마세요.”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나잘란 박사는 한나를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한나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답변 2) 아닙니다. 한나가 쓴댓글은 나잘란이란 명칭의 병원이 여럿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잘란 박사를 특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침해정보의 삭제 요청하기

▪ 사이트에 인터넷 명예훼손이 될 만한 정보가 공개되어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증명하고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내용을 사이트에 올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하기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먼저, 부모님께 알리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제1항 참조).

▪ 조정신청방법

▹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항).

▹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 전자민원-민원신청-통신민원-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나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형사고소하기

▪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참조).

민사소송 제기하기

▪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발생한 분쟁의 조정,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인터넷 명예훼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인터넷으로 물건사기

7.1. 물건의 구입 및 반품하기

7.1.1. 물건 구입하기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란 ?

▪ “전자상거래”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종이가 아닌 화면에서 보여 지는 전자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

▪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하려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참조).

▪ 사이트 운영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5호).

믿을 수 있는 쇼핑몰 선택하기

▪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맺는 경우 상품이나 계약 상대방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5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제2항).

√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의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제대로 올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게시판을 확인하세요.

√ 게시판에 올리는 소비자 의견은 쇼핑몰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구매하는데도 도움이 되지요. 소비자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는지, 상품의 품질이나 반품, 배송 등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좋아요.

▹ 사기사이트인지 확인하세요.

√ 메일이나 가격비교사이트 등을 통해 제품을 할인판매 한다고 광고하고는 대금만 받고 배송을 해주지 않거나 사이트 자체를 폐쇄한 후 사라지는 사기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해요.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쇼핑몰정보> 에서는 서울시에 신고된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정보와 평가내용을 제공하고 있어요. 상품을 구매하기 전 쇼핑몰이 믿을만한 곳인지 이곳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았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상담(☎ 1372)을 이용하거나, 서울시에 신고된 쇼핑몰의 경우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상담실>을 이용해보세요.

“에스크로제도”를 이용해 결제해야 해요.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구매의 안전을 위해 제품 등을 받을 때까지 은행과 같은 제3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 이용하기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는 인터넷쇼핑몰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미리 상품 대금을 지급받는 선불식 판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참조).

▪특히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이나 중고물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가 유용해요.

▹문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의 경우 지급을 정지시키면 되지만 현금은 결제 즉시 판매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에스크로제도인데 상품을 사면서 대금을 결제하되 은행 등의 에스크로 사업자가 결제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거예요.

▹개인 간에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도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한 후 대금을 건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신발을 구입하려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대박세일을 하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이 있어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며칠 뒤에 배송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 다시 확인하니 쇼핑몰 자체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으로 결제할 때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했나요? 이용했다면 은행 등의 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먼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쇼핑몰정보> 에서 믿을 수 있는 쇼핑몰인지 확인하세요.

만약 쇼핑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상담신청>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상담실>에 상담신청을 해 보세요. 그곳에서 쇼핑몰과 연락을 취하고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님과 상의해서 <사이버안전지킴이> 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사기로

신고를 하세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후 진행상황을 알려 줄 것입니다.

7.1.2. 물건 반품하기

물품주문 취소 및 반품하기

주문 취소 및 반품할 수 있는 기간

▪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어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

※ 다만, 서면을 받은 때보다 물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거나 반품할 수 있어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 만약 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②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을 받은 경우 ③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에 주문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문 취소 혹은 반품이 가능해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어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해요.)
-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주문 취소나 반품등을 인정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물품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어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 게임 아이템의 주문을 취소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온라인게임 중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비용이 너무 나와 부모님께서 아시고는 당장 주문취소하고 환급을 받으라고 하세요.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일반적인 경우 게임 사이트의 유료 아이템을 구입한 후 7일 이내에 주문을 철회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이트에서 아이템의 구입 전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임을 사전에 알려주고 이에 동의를 한 다음 구입했거나 구입한

아이템을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참조 >

※ 작동 확인을 위해 한 번 켠 컴퓨터~~ 반품이 가능할까요?



(질문)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고 전액을 환불받으려고 하니 컴퓨터를 한 번 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네요. 정말 반품이 안 되나요?

(답변) 인터넷으로 구입한 컴퓨터는 일단 제품에 전원을 작동시키면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환불을 받기 어려워요.

물론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이 생각했던 제품이 아니어서 반품을 원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포장되어 온 상태 그대로 판매자에게 반송한다면 환불은 가능합니다.

다만, 포장박스를 포함해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등의 파손 및 훼손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해요. 또한 하자가 없고, 단순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는 경우에는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참조 >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효력이 없어요.

▪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스마트폰 앱에서 결제되는 사이버캐쉬는 환불받을 수 없나요?

(질문)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 아이템을 구입한다는 확인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그런데 20분만에 20만원의 정보이용료가 나가고 3만원이 결제되어 너무 놀랐습니다. 취소하려고 하니 "아이템 및 캐쉬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라고 미리 고지했으니 안 된다고 해요. 환불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어플에서는 간단한 결제절차 만으로도 큰 금액이 결제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많은데요, "아이템 및 캐쉬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라는 고지만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7일 이내에,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회를 요청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결제된 사이버캐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2. 5. 30.) 참조>

※ 인터넷으로 구입한 "흰색 옷"은 "흰색"이라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능한가요?

(질문) 인터넷에서 흰색 원피스를 구입했는데 배송을 받아보니 원단 재질 등이 생각한 것과 달라 반품을 요청하자 "흰색 옷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구입하기 전 알렸고 제가 이에 대해 동의한 후 구입했으니 안 된다며 반품을 거절하고 있어요. 뒤늦게 살펴보니 사이트에 "반품 불가" 안내가 있긴 했지만 구입할 때 보지 못했고 이것에 동의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옷은 받은 그대로이고 전혀 문제도 없는데 단지 "흰색"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반품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반품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비자가 잘못해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반품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 제6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하지만 "흰색 계열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방해 행위"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가 사전에 고지했음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것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률 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어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따라서, 당당히 반품을 요구하고 그래도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고, 그래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 피해구제·분쟁조정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참조 >

환불

▪ 환불요청을 하면 소비자는 이미 받은 물건을 반환해야 해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 판매자는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불해야 하고, 대금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기간동안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참조).

배송료의 부담

▪ 소비자의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을 하는 경우 물건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해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잘못 배송되는 등 판매자의 잘못으로 반품을 하는 경우 물건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0항).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반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하기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로서(「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 물품의 반품과 관련한 분쟁의 처리기준은 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물품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해결기준을 생각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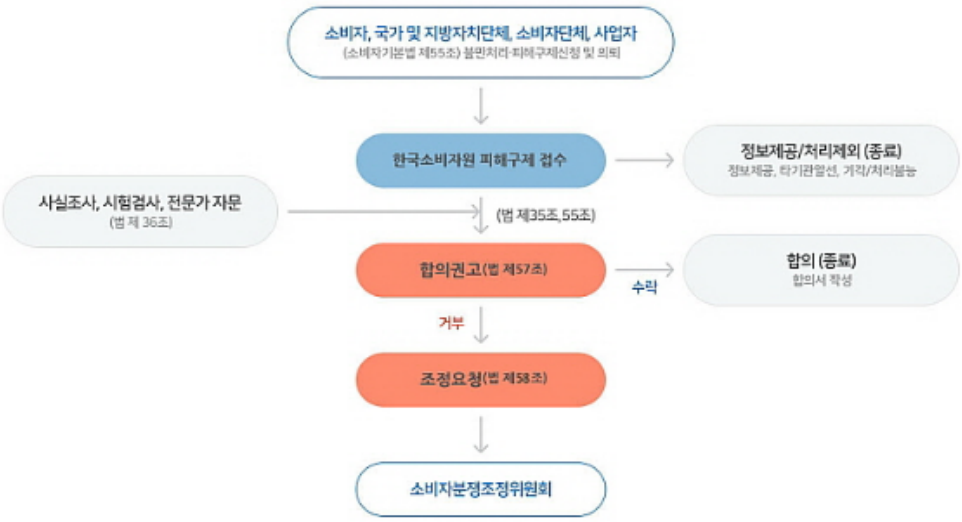
▪ 상담신청

▹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청을 하면 조사 후 ① 사업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②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해 줍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및 제60조).

▹ 상담신청은 **상담전화(국번없이 ☎ 1374번)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포털**(www.ccn.go.kr)을 통해 하면 되고(「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신청 후 기다리면 합의를 하도록 도와주거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면 그 이유 등을 알려줘요.

▪ 분쟁조정절차

▹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합의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30일이 지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해 다시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제1항).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절차안내(소비자상담)-피해구제(합의권고) 참조>

민사소송 제기하기

▪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248조이하 참조).

> ※ 소비자분쟁해결방법 중 하나인 민사소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소비자분쟁해결-소송하기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